

2024.9 vol.6

ISSUE REPORT



중국, 딥페이크(Deepfake) 규제 강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조경매 팀장, 우만주 연구원

CONTENTS

1. 서론
2. 중국, 'AI 제작 콘텐츠' 표시 의무화 규정 발표
3. 중국의 딥페이크(Deepfake) 관련 규제
4. 시사점



Issue/Report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중국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를 요약·정리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ISSUE REPORT



KOREA-CHINA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2024.9 vol.6

중국, 딥페이크(Deepfake) 규제 강화

CONTENTES

1. 서론	02
2. 중국, 'AI 제작 콘텐츠' 표시 의무화 규정 발표	03
3. 중국의 딥페이크(Deepfake) 관련 규제	04
4. 시사점	12

1 서론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임. 이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진, 동영상, 음성물 등을 의미함

- 메타, 구글, 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딥페이크 확산을 막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라벨, 꼬리표)’를 붙이는 등 자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임
- 미국 정부는 AI 기술 개발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통해 워터마크를 넣도록 했고, 유럽연합(EU)은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AI 규제법’을 통과시킴
- 중국 정부도 최근 ‘AI 제작 콘텐츠’ 표시 의무화 규정을 발표하여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제작, 전시, 배포 기간에 ‘AI로 제작’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
 -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들은 문자, 영상, 오디오, 가상화면 등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 대해 문자, 음성, 그래픽 같은 눈에 띄는 표시로 이를 알려야 함. 아울러 디지털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태그 같은 좀 더 정교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도 권장됨
 -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악의적으로 해당 필수 표시를 삭제, 변조, 위조, 은폐해서는 안 되며,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부적절한 식별로 다른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됨

▶ 중국은 딥페이크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민법전(民法典)》, 《형법(刑法)》, 《규정(規定)》의 다층적 규제 프레임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생성 및 위조의 전체 과정을 규제하고 있음

- (법적 기반 강화) 민법전, 형법, 네트워크 안전법 등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와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을 규제하고 있음. 이 법률들은 개인정보 보호, 명예권 침해 방지, 허위 정보 유포 금지 등을 명시하며, 위반 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부과
- (딥페이크 및 생성형 AI 기술 규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과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등을 시행하여 딥페이크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를 규정
- (감독 관리 강화)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와 관련 기관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와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서비스 제공자는 알고리즘 등록, 안전 평가 등을 통해 규제를 준수하며,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허위 정보 유포 방지 등 의무를 이행

▶ 본문은 중국의 이러한 규제를 법과 그 하위 규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대표적인 사례와 실제 판결 결과를 소개함



2

중국, 'AI 제작 콘텐츠' 표시 의무화 규정 발표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표시·식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

- (배경) 이번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AI 제작 콘텐츠' 표시 의무화 규정(초안)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 표시와 관련된 첫 번째 국가 표준임
 - 2024년 8월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합성 콘텐츠의 투명성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여 플랫폼에 워터마킹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규정
 -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4년 8월 디지털 콘텐츠 추적성 표시법을 발표하여 콘텐츠 출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AI가 생성한 자료에 추적 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음
 - 국제전기통신연합은 2024년 7월 콘텐츠 라벨링을 포함한 '딥페이크 및 생성 AI 탐지에 관한 워크숍 보고서: AI 워터마킹 및 멀티미디어 진위성 표준'을 발표하여 심층적으로 합성된 콘텐츠의 탐지를 위한 표준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딥페이크(deepfake)를 규제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인터넷 정보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을 발표하여 심층 합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해 콘텐츠를 만들 경우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 'AI 제작 콘텐츠' 표시 의무화 규정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AI 합성 콘텐츠의 표시방법을 더욱 구체화하였으며,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제작, 전시, 배포 기간에 'AI로 제작'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
 - 온라인 콘텐츠 제공자들은 문자, 영상, 오디오, 가상화면 등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 대해 문자, 음성, 그래픽 같은 눈에 띄는 표시로 이를 알려야 함. 아울러 디지털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태그 같은 좀 더 정교한 표식을 사용하는 것도 권장됨
 -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악의적으로 해당 필수 표시를 삭제, 변조, 위조, 은폐해서는 안 되며,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부적절한 식별로 다른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도 안 됨

〈'AI 제작 콘텐츠'의 2가지 표시방법〉

- ▶ **명시적 표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표시로, 생성된 콘텐츠나 인터페이스에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 형태로 추가
 - 1) 텍스트: 시작, 중간, 끝에 텍스트 또는 기호로 표시
 - 2) 오디오: 시작, 중간, 끝에 음성 안내나 리듬으로 표시
 - 3) 이미지: 적절한 위치에 명확한 표시 추가
 - 4) 비디오: 시작 화면 및 재생 주변에 명확한 표시 추가
- ▶ **암시적 표시:** 사용자에게 쉽게 인지되지 않는 표시로, 생성된 콘텐츠의 파일 메타데이터에 추가

3

중국의 딥페이크(Deepfake) 관련 규제

▶ 중국은 현재 Deepfake와 생성형 인공지능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민법전(民法典)》, 《형법(刑法)》, 《규정(規定)》의 다층적 규제 프레임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생성 및 위조의 전체 과정을 규제

	구분	내용(예시)	실행 시간
법	민법전	제1019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타인의 초상권을 훼손하거나 정보기술 수단을 이용한 위조 등의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 됨	2021.01
	형법	제246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비방할 경우,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021.03
부처 규정	《네트워크 음성·영상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제11조: 네트워크 음성·영상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네트워크 음성·영상 정보 서비스 사용자가 딥러닝, 가상현실 등 신기술과 새로운 응용 기술을 이용하여 비현실적인 음성·영상 정보를 제작, 게시, 유포할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2020.01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	제23조: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제작자,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딥러닝, 가상현실 등 신기술과 새로운 응용 기술을 이용하여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금지하는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됨	2020.03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	- 제6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심층 합성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게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되며, 심층 합성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됨 - 또한 심층 합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작 및 게시된 뉴스 정보를 재전송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 뉴스 정보 출처 기관에서 게시한 뉴스 정보를 법에 따라 재전송해야 함	2023.01
실행 방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 방안》	- 제4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함 ① 국가 정권 전복을 선동하거나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행위, 국가 통일과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금지 ② 알고리즘 설계, 훈련 데이터 선택, 모델 생성 및 최적화, 서비스 제공 과정에 민족, 신앙, 국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건강 등의 차별 방지 ③ 지식재산권과 상업 윤리를 존중하고, 기업 비밀을 보호하며, 알고리즘, 데이터, 플랫폼 등의 우위를 이용해 독점이나 불공정 경쟁 방지	2023.08



구분	내용(예시)	실행 시간
	④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거나 타인의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사생활권 및 개인 정보 권리를 침해해서는 행위 불허 ⑤ 서비스 유형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 제12조: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에 따라 이미지, 동영상 등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표식을 해야 함	

▶ **(민법)** 중국민법전은 온라인상의 불법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21년 1월 1일 발효)

- **(자연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명시)**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권리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제1032조). 가짜뉴스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에(제1024조) 이러한 가짜 정보를 온라인상 유통시키는 것은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제1165조)
-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한 언론 미디어의 민사적 책임 명시)** 당사자가 간행물, 인터넷 등 언론 미디어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자기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언론 매체로 하여금 왜곡된 사실을 정정하거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제1028조)
- **(네트워크이용자(网络用户), 네트워크서비스사업자(网络服务提供者)의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시)** 네트워크 이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불법 행위를 실행한 때에는 피해를 본 당사자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유포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링크를 차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제1195조 제1항)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관련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전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만약 제때에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실행한 네트워크 이용자와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함(제1195조 제2항)

이 외에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연대적 책임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였음. 즉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네트워크이용자와 함께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함(제1197조)

▶ **(형법)** 한국의 경우,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의 유포와 관련하여 형법(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중국도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등은 형법의 규제 대상에 속함

- **(날조, 비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국가정권전복 및 사회주의 제도의 전복을 선동)** 이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拘役),³⁰⁾ 관제(管制),³¹⁾ 정치권리 박탈에 처하고 주모자 및 죄행이 엄중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제105조 2항)

- **(테러관련 허위정보를 제작, 고의 유포한 범죄 규정 신설)** 폭파위협, 생화위협, 방사위협 등에 관한 테러정보를 허위로 작성 또는 허위로 작성된 테러정보라는 사실을 변연히 알면서 고의로 인터넷 또는 기타 미디어를 통해서 유포해서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때에는 5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拘役) 또는 관제(管制)에 처하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때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함(제291조의 1 제1항)

위기 상황, 전염병, 자연재해, 경찰 수사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작하여 인터넷 또는 기타 미디어에서 유포하거나 또는 이러한 정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변연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인터넷 또는 기타 미디어에서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요란(搖亂)한 때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拘役), 관제(管制)에 처하며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때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함(제291조의 1 제2항)

- **(비방죄, 모욕죄)** 폭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또는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한 자로서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拘役), 관제(管制) 또는 정치권리 박탈에 처함(제246조 1항)

- 한국의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상당한 규정인데, 중국 형법에서는 모욕죄, 비방죄(誹謗罪)라고 함

- **(소란죄)** 인터넷을 이용해서 허위정보를 제작,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형법 제293조의 소란죄(尋衅滋事)를 적용하며, 그 근거로는 2013년 10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공포한 「정보망을 이용한 비방 등 형사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상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처벌함을 따름

- **(상업신용과 평판 손해)** 허위사실을 제작, 유포하여 타인의 상업신용·상품평판에 손해를 입혀, 타인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정상이 중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

▶ **(네트워크 안전법)** 중국 정부가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큰 틀에서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 China Cyber Security Law)²²⁾을 도입하고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

- **(온라인 실명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사업자는 통신망 가입 수속이나 정보공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실제 신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4조). 제공 받은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목적, 방식, 범위 등을 명시하며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음(제22조)



- 한국은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2008헌마324)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 확인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

● **(인터넷 사전 검열제도)** 네트워크안전법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정보를 네트워크사업자 등을 통해 규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의 유관부서에 부여하고(제5조, 제8조),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자 등이 당국에 기술 제공과 수사에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돌발 사태가 발생시 특정지역의 통신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포함함(제57조). 또한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 전복, 국가분열 선동, 국가통일 파괴, 테러와 극단적 민족주의 선양, 음란물과 허위정보 전파 등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함(제12조 제2항)

● **(네트워크사업자의 불법정보 차단 및 전달 금지 의무화)** 네트워크 사업자는 불법 정보를 발견하면, 전송 중단, 제거, 확산 방지, 기록 보관 등의 조치를 수행하고 유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제21조, 제25조), 네트워크 사업자의 수사기관 협조를 의무화하고 주관부처는 국가 안전, 사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함. 처벌의 경우 시정명령이 가장 많으며 위반이 심각하면 영업정지나, 벌금, 구류, 사이트 정지까지 가능함(제59조, 제60조, 제61조)

- 《민법전》 제1019조는 공민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타인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타인의 초상을 제작,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

* 고평 한복(漢服) 관련 인터넷 유명인 웨이 씨가 "AI 얼굴 교체" 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AI 얼굴 교체 기술을 통해 원래 영상 속 자연인의 이미지를 교체한 것이 《민법전》 제1019조에서 말하는 "정보 기술을 이용한 위조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또한, 음성은 중요한 인격적 표지로, 개인의 신원을 식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격적 전속성을 지니고 있어 법적 의미에서 인격 속성을 인정받는데, 타인의 음성을 딥페이크로 위조하는 행위는 인격권 보호에 해당(사법 판결 사례 1 참조)

▶ **(치안관리처벌법)**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행정법에 속하는데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악의적으로 가짜뉴스(謠言)를 제작 및 유포한 경우)** 치안처벌법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 위안 이하의 벌금(29)을 병과할 수 있음

①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위험 상황·전염병 상황·경찰 출동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고의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② 가짜 폭발성·유독성·방사성·부식성 물질 혹은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 물질을 투척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③ 방화·폭발·위험 물질을 투척하였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임. 그리고 치안 처벌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행정 심판을 신청하거나 혹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제102조)

▶ **(하위 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딥페이크 규제를 통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 준수사항, 데이터 및 기술 관련 의무, 관리 감독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 합성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을 시행

*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 ‘심층 합성 관리 규정’과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임시 방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때 타인의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사생활권 및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딥페이크 기술 이용은 허용하되 허위정보의 규제와 및 심층합성기술의 표시 등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인터넷 서비스 기술 지원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 준수사항

구분	주요 내용
금지 행위	‘누구든지 딥페이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상 제작·복제·배포·전파가 금지된 정보의 제작’과 ‘법령상 금지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됨 -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허위 뉴스의 제작 등을 금지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법령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조치, 직원교육, 알고리즘 심의, 이용자 등록,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서비스 관리 규칙 및 플랫폼 협약 제정 및 공개, 서비스 이용계약을 개선하며, 딥페이크 서비스 이용자 신원 인증 방안 마련
인터넷 앱스토어 등 앱을 배포하는 플랫폼의 의무	플랫폼 입점 앱사전심의 및 딥페이크 서비스의 보안 평가 실시, 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즉시 앱 판매금지, 경고, 서비스 중단 및 퇴출 등 조치

●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 및 해당 서비스의 딥페이크 기술 지원자 의무는 아래와 같이 규정

- 얼굴, 목소리 등 생체정보의 편집 기능 제공 시, 딥페이크 서비스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주체에게 편집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지
- 생체정보(얼굴·목소리 등), 국가안보, 국가 이미지, 국익 및 사회 공익과 관련될 수 있는 특수 물체 및 장면 등의 정보의 생성·편집 도구 제공 시 보안 평가 수행(자체 및 전문기관 위탁)
- 딥페이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딥페이크 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딥페이크된 콘텐츠에 합리적 방식으로 표시

〈딥페이크 표식해야 할 내용〉

- ① 지능형 대화, 지능형 글쓰기 등, 자연인을 모방하여 텍스트 생성 또는 편집하는 서비스
- ② 음성 합성, 음성 모방 등 음성 생성 또는 개인의 특성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서비스
- ③ 얼굴 생성, 얼굴 교체, 얼굴 조작, 자세 조작 등 인물 이미지 변경 또는 동영상의 생성 등 개인의 특성을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편집 서비스
- ④ 사실처럼 보이는 영상(沉浸式拟真场景) 등의 생성 또는 편집 서비스
- ⑤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현저하게 변경하는 기능을 가진 기타 서비스



- 국가·지방의 인터넷 정보 부서와 국무원·지방의 인터넷 관리 부서 및公安부서는 딥페이크 서비스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을 담당함

▶ **(하위 규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을 발표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

- 알고리즘 추천 기술의 적용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성 및 합성, 개인화 푸시, 분류 및 선택, 검색 및 필터링, 예약 및 의사 결정 등 알고리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 국가 차원에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조정
 - (국무원 산하 통신,公安, 시장 감독 등 관련 부서) 각자의 책임에 따라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감독 및 관리를 담당
 - (지역 인터넷 정보 부서)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거버넌스와 감독 및 관리 업무를 조정
 - (지방 부서) 각자의 임무에 따라 자체 행정 구역 내에서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의 감독·관리 담당
-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서비스 기준은 아래 내용 참조

구분	주요 내용
관리시스템 및 기술조치 수립	• (사용자 등록) 정확한 사용자 등록 시스템 구축 • (정보 유포 검토) 유포되는 정보의 적합성 검토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과 시스템 수립 • (보안 사고 긴급 대응)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체계 구축
사용자 모델 및 라벨 관리 강화	• 사용자 관심사 및 라벨 관리 규칙 개선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추천 서비스 제공
허위 뉴스 및 정보 생성·합성 및 유포 금지	• 허위 뉴스나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됨
온라인 여론 조작 및 불공정 경쟁 금지	•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온라인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감독을 회피하고 독점적이고 불공정한 경쟁에 관여해서는 안 됨

- 이용자 권익 보호 요건은 알고리즘의 알권리, 선택권 보호 및 특정대상에 대한 보호조치로 구성됨

구분	주요 내용
알고리즘의 알 권리 보호	• (서비스 제공 사실 통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림 • (서비스의 기본 원칙 공개) 서비스의 목적, 의도, 주요 운영 메커니즘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구분	주요 내용
알고리즘 선택권 보호	• (비 개인화 옵션 제공) 이용자에게 개인 특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옵션 제공 •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해제 옵션 제공) 이용자가 원할 경우 쉽게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제공
특정 대상에 대한 보호 조치	•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을 유도하지 않고, 건강한 콘텐츠 제공 • (고령자)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 보장 • (노동자) 주문 배정, 보수 지급, 근무 시간 등에서 공정한 알고리즘 적용 • (소비자) 소비자의 선호도나 거래 습관 등을 이용하여 거래 가격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됨

▶ **(하위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 공동으로 ‘**생성성 AI 서비스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하여 ‘23년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

* 7개 부처 :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라디오·TV방송총국

- 전 세계적으로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의 데이터보호 감독관리기관들이 ChatGPT 관련 정보 안전 위험에 대해 우려하거나 관련 조사에 착수
 - 이에 중국은 생성형 AI 기술의 건강한 발전과 규범화 응용을 위한 전문 방법을 발표해 생성형 AI 기술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도적 요구 등에 대해 규정
-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정보안전의 효율적 추진을 강조

〈‘생성형 AI 서비스관리 잠정방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R&D 혁신	• 생성형 AI 기술의 다양한 분야 혁신응용을 장려해 해당 산업의 스마트화 발전 촉진 • 생성형 AI 알고리즘, 프레임, 칩 및 관련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기초기술 자주혁신 지원 • 산업조직, 기업, 교육·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 생성형 AI 기술혁신, 데이터자원 건설, 전환응용 및 위험제어 등 분야 협력 지원 • 생성형 AI 인프라 및 훈련데이터자원 공공플랫폼 건설 추진, 안정성이 높은 칩·소프트웨어·도구·알고리즘·데이터자원의 사용 장려
2	사회적 이슈 법적 대응	•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불법 또는 행정법규에 위배되는 콘텐츠의 생성 불가 • 알고리즘 설계, 훈련데이터선택, 모델 생성 및 최적화, 서비스 제공 등 과정에 기사성문제방지 • 지재권과 상업 도덕 존중, 타인의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 불가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투명도, 생성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
3	의무·책임	• 합법적 데이터와 기초모델 사용, 훈련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객관성·다양성 등 향상 • 기존의 ‘인터넷정보서비스 심층합성 관리규정’에 따라 이미지, 영상물 등 생성형 콘텐츠 표기



	구분	주요 내용
		•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자 관련 정보와 사용기록 보호, 사용자의 개인정보 검색·복제·변경·삭제 등 요청사항 적시 수용 • 서비스의 적용대상, 장소, 용도를 공개하여 사용자의 합법적 생성형 AI 기술 사용 지도
4	감독 관리	• 생성형 AI 서비스 안전평가 및 알고리즘 등록 필요 •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주관부문의 요구에 따라 훈련데이터 출처, 규모, 유형, 표기 규칙, 알고리즘 메커니즘 등 설명 필요

▶ **(관련 사례와 법원 판결)** 최근 중국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 법원은 저작권, 인격권, 개인 정보 보호 권리, 반 부정 경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판결하는 추세

▶ 사례 : ‘AI 얼굴 합성(AI換臉)’ 소프트웨어 침해 사건

●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의 얼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변장’ 템플릿을 제공하고 유료로 판매

- 사건 일자: 2024년 6월 20일
- 법 원: 베이징 인터넷 법원
- 원 고: 고평 한복 단편 영상 모델 라오(廖) 씨와 우(吳) 씨
- 피 고: AI 얼굴 합성 소프트웨어 운영회사
- 주요 내용:
 - ☞ 해당 앱이 원고들이 게시한 비디오를 기반으로 ‘변장’ 템플릿을 만들어 유료로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초상 정보가 포함된 비디오를 무단으로 업로드 및 사용하여 원고의 얼굴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조작한 점에서 원고의 개인 정보 권리를 침해

● 법원의 판단과 판결

- 얼굴이 대체된 템플릿 비디오는 원고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얼굴 정보가 무단으로 수집, 사용, 분석되었고, 피고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피고에게 사과 및 정신적, 경제적 손해 배상을 청구

▶ 사례 : 중국 최초 AI 생성 음성 침해 사건

● (주요 내용) 원고는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라 녹음물을 제공하였으나, 피고들은 해당 녹음물을 AI 학습에 사용하여 원고의 음성과 동일한 AI 텍스트 음성 변환 제품을 개발

- 사건 일자: 2024년 4월 23일
- 법 원: 베이징 인터넷 법원
- 원 고: 성우 인(殷)모 씨
- 피 고: AI 기술을 이용해 원고의 음성을 무단 사용한 5개 회사
- 주요내용 :
원고 인 모 씨는 성우로, **피고 2**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녹음물을 제작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녹음물의 저작권은 피고 2에게 귀속했고, 피고 2는 원고의 녹음물을 **피고 3**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3은 원고의 음성을 AI 학습에 사용하여 원고와 동일한 음성의 AI 텍스트 음성 변환 제품 개발하여 해당 제품은 **피고 4**에 의해 호스팅되고 **피고 5**에 의해 유통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 1**이 이를 구매하여 자신의 플랫폼에서 대중에게 서비스 제공

● 법원의 판단과 판결

- 1) 자연인의 음성은 개인의 행동과 신원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음.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음성도 특정 자연인과 연관시킬 수 있다면, 음성 권리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 2) 피고 2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원고의 음성을 AI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음. 원고의 허락 없이 AI 화를 통한 원고 음성의 사용은 원고의 음성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 3) 피고 1인 베이징의 모 인공지능 기술 회사 및 피고 3인 소프트웨어 회사는 원고에게 사과하고 피고 2인 베이징의 모 문화 매체 회사 및 피고 3인 소프트웨어 회사는 원고에게 총 25만 위안 (4,704만 5,000원)의 손해 배상

4 시사점

▶ 중국은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규제를 서두르기 시작함

- 중국은 민법전과 형법 등 기존 법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허위 정보 유포 금지를 규제하고, 딥페이크와 AI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조치는 AI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고, 콘텐츠의 진위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함
- 중국은 향후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빈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규제는 다른 국가들의 AI 관련 법률과도 상호 연계되어 있음



5

참고 문헌

1. (24.1.31, 肖飒团队) 如何避免Deepfake成为“法外狂徒”?
2. (24.9.11, 金杜研究院)真假难辨：再议AI深度伪造 (Deepfake) 之法律边界
3. (23.1.31, NIA) 중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합성 관리 규정 시행
4. (22.1.4, 网信办)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等四部门发布《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
5. (23.8.11, 中国网信网)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6. (24.9.14, 中国网信网)完善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方法 构建健康的信息网络生态环境



필자 소개

▶ 조 경 매 (赵京梅)

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팀장

kmcho@kostec.re.kr

▶ 우 만 주 (于曼姝)

현)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연구원

yumanshu87@naver.com

2024.9 vol.6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ISSUE REPORT

중국, 딥페이크(Deepfake) 규제 강화

| 발행일 | 2024. 9.

| 발행인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주소 : 北京市朝阳区酒仙桥路甲12号电子城科技大厦1308

TEL : 86)10-6410-7876 / 6410-7886

WEB : <http://www.kostec.re.kr>